

민주노총 임원 직접선거 조합원 개인정보 활용방침

▶ 조합활동을 위한 조합원의 개인정보 활용은 별도의 조합원 동의를 요하지 않음

- 노동조합의 선거를 위해 조합원의 휴대전화번호 등을 수집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4호, 제6호에 의거하여 노동조합이 정당하게 수집·처리할 수 있음.
- 노동조합의 상급단체 조합활동을 위한 조합원의 개인정보 이용 역시 노동조합의 조합활동에 포함된다고 볼 것임.
- 특히 가입한 노동조합의 선거는 조합원의 권리로서 법적 의무에 해당되는 것과 달리, 민주노총의 임원선거는 법적 의무가 아닌 노동조합 운영을 위한 내부 규약상 의무(계약상 의무)에 해당.
- 민주노총 임원선거를 위해 별도로 개별 조합원에게 개인정보 이용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음.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현행)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5.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시행일 2023. 9. 15.)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23. 3. 14.>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정보주체와 체결한 계약을 이행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7.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병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 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신설 2020. 2. 4.>

▶ 노동조합의 조합활동을 위해 조합원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 정보처리하도록 위탁하는 경우, 제3자 제공사실을 문서로 공개하고, 제3자의 개인정보 취급에 대해 감독하여야 함.

- 민주노총(중앙선거관리위원회)은 민주노총 임원선거를 위하여 조합원의 개인정보를 수집·활용하는 사실 및 정보처리를 위해 위탁한 사실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함.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개인정보의 제공)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공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제15조제1항제2호·제3호 및 제5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시행일 2023. 9. 15.)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공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개정 2020. 2. 4., 2023. 3. 14.>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제15조제1항제2호, 제3호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가 제3자에게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에 의하여야 한다.

1.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2.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
- ②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개인정보처리자(이하 "위탁자"라 한다)는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정보주체가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 ③ 위탁자가 재화 또는 서비스를 홍보하거나 판매를 권유하는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④ 위탁자는 업무 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수탁자를 교육하고, 처리 현황 점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24.>

- ⑤ 수탁자는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위탁받은 해당 업무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시행일 2023. 9. 15.)

- ① 개인정보처리자가 제3자에게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14.>

- 1.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 2.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 3. 그 밖에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

- ②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개인정보처리자(이하 "위탁자"라 한다)는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다시 위탁받은 제3자를 포함하며, 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정보주체가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14.>

- ③ 위탁자가 재화 또는 서비스를 홍보하거나 판매를 권유하는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④ 위탁자는 업무 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수탁자를 교육하고, 처리 현황 점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24.>

- ⑤ 수탁자는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위탁받은 해당 업무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⑥ 수탁자는 위탁받은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위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8조(개인정보의 처리 업무 위탁 시 조치) ① 법 제26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1.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 2.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 3.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 4.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관리 현황 점검 등 감독에 관한 사항
- 5. 법 제26조 제2항에 따른 수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 ② 법 제26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개인정보처리자(이하 "위탁자"라 한다)가 위탁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지속적으로 게재하는 방법을 말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공개하여야 한다.

- 1. 위탁자의 사업장등의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는 방법
- 2. 관보(위탁자가 공공기관인 경우만 해당한다)나 위탁자의 사업장등이 있는 시·도 이상의 지역을 주된 보급 지역으로 하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다목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일반일간신문, 일반주간신문 또는 인터넷신문에 실는 방법
- 3. 같은 제목으로 연 2회 이상 발행하여 정보주체에게 배포하는 간행물·소식지·홍보지 또는 청구서 등에 지속적으로 실는 방법
- 4.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기 위하여 위탁자와 정보주체가 작성한 계약서 등에 실어 정보주체에게 발급하는 방법

- ④ 법 제26조 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서면, 전자우편, 팩스, 전화, 문자전송 또는 이에 상당하는 방법(이하 "서면등의 방법"이라 한다)을 말한다.
- ⑤ 위탁자가 과실 없이 제4항에 따른 방법으로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정보주체에게 알릴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게재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지 아니하는 위탁자의 경우에는 사업장등의 보기 쉬운 장소에 30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 ⑥ 위탁자는 수탁자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법 또는 이 영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과 법 제26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는지를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감독하여야 한다.

▶ 민주노총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조치사항

- 민주노총 임원선거에 대해서는 민주노총 선거관리규정 및 규칙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게시할 선거인명부 등재 공고문을 통해 개인정보 사용 및 처리 위탁 등의 사실을 직접 공지할 것임.
 - ▶ 선거인명부 등재 공고문(선거관리규칙 제5조 별지 제1호)
 -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
- 공고문을 게시할 때, 조합원의 ①개인정보 이용, ②제3자 제공, ③정보처리위탁 사실을 공지함.
- 민주노총은 생년월일이나 주민등록번호를 절대 취합하지 않음을 함께 공지함.

〈공고할 사항(예시)〉

1. 민주노총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노동조합의 정상적인 활동 및 운영을 위한 목적으로 민주노총 조합원의 개인정보를 가맹조직 및 단위노동조합으로부터 동법 제1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해당 개인정보를 제공받았습니다.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전국민주노총조합총연맹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 상급단체 운영
-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휴대전화번호
-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기간

민주노총 : 2023년 민주노총임원 직접선거에 필요한 기간

2. 민주노총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 위탁받는 자 (수탁자) : 모바일 및 ARS투표처리 기관명
-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 모바일 및 ARS투표처리 업무
- 위탁기간 : 투표업무 처리 기간

3. 민주노총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위탁계약 체결시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 선거에서 조합원의 개인정보 활용의 법적 근거

민주노총 법률원 (2023. 6. 1.)

- 노동조합은 조합활동의 목적 범위 내에서 조합원의 개인정보를 별도의 조합원 동의 없이도 수집,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사용할 경우,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는 것을 원칙(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호)으로 하나, 법률상 근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동조항 제2호), 정부주체와 체결한 계약을 이행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동조항 제4호 2023. 9. 15. 시행),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동조항 제6호)에 동의없이 개인정보의 수집·활용을 허용합니다.

-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헌법상 단결권과 노동조합법에 따라 보장된 권리로서, 이러한 노동조합의 임원선거에서 선거권이란 조합원이 노동조합의 운영에 참여하는 핵심적인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즉 노동조합법은 노동조합의 임원을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노조법 제16조 제4항), 노동조합은 조합원에게 임원선거에 참여할 선거권을 공정하게 부여해야 할 법령규정에 따라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선거를 위한 필요한 정보를 수집·사용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당사자 동의 없이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노동조합과 조합원은 조합원가입원서를 작성하여 노동조합의 모든 문제에 균등하게 참여할 권리와 조합비 납부 및 노동조합의 규약과 결의에 따를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노조법 제22조). 조합원이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행위는 가입을 희망하는 노동자 청약과 조합의 승낙이라는 의사표시의 합치에 의한 것으로 계약에 준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노동법학계의 통설적 견해입니다. 이처럼 노동조합 가입과 관련한 계약의 성립과 이행에 있어 노동조합의 임원선거는 계약의 핵심적인 사항이며, 민주노총의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조합원은 선거권을 행사하기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의 수집·활용에 협조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즉 노동조합 가입이라는 계약의 성립에 따라 조합원은 노동조합의 규약·규정에 의거 노동조합 임원선거에서 모든 투표방법(현장 투표, 모바일투표, ARS투표, 이메일투표 등)에서 균등한 참여기회를 보장받고 선거인명부 작성 및 선거인의 본인인증 등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전화번호)가 불가피하게 요구되므로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조합원의 개별적인 동의 없이 선거에 필요한 개

인정보의 수집·활용이 허용됩니다.

한편 노동조합 임원선거사무는 노동조합의 유지·존속을 위한 본질적인 활동이며, 노동조합의 전자투표 등을 포함한 투표방법이 노조법상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원칙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조합원의 전화번호를 활용하는 것은 노동조합의 정당한 이익을 위해 불가피한 것입니다.

특히 현재 모바일이 대중적으로 사용되기 있고, 온라인을 통해 단체의 의사를 결정하는 것은 사회·과학기술 발전의 필연이므로 노동조합의 선거사무 역시 이러한 사회·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효율적인 투표 절차를 활용할 필요성이 큰 사정 역시 감안하면, 전자투표 등을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전화번호와 같은 조합원의 개인정보는 불가피하게 요구되므로,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조합원 개인정보 수집·활용이 법적으로 보장됩니다.

- 따라서 노동조합의 선거를 위해 노동조합이 조합원의 휴대전화번호 등을 수집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4호, 제6호**에 의거하여 노동조합이 정당하게 수집·처리할 수 있으므로, 사용자는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노동조합을 위한 필수적인 정보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